# 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1. 2010가합25600(본소),2010가합96947(반소)]



# 【전문】

【원고(반소피고)】 주식회사 지케이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수한)

【피고(반소원고)】

【변론종결】2010. 12. 15.

# 【주문】

#### ]

- 1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,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들이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본소: 피고(반소원고) 1은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에게,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 발행의 보통주식 13,400주(1주의 금액 5,000원)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원고(반소피고)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는 위 13,400주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의 주주 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(반소피고)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. 반소: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들 사이에 2009. 4. 21. 체결된 특허기술사용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【청구취지】본소: 피고(반소원고) 1은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에게,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 발행의 보통주식 13,400주(1주의 금액 5,000원)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원고(반소피고)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는 위 13,400주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아트이앤씨의 주주 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(반소피고)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. 반소: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들 사이에 2009. 4. 21. 체결된 특허기술사용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### [이유]

## 】1. 기초사실

-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2호증의 1, 갑 제12호증의 1, 2, 3, 갑 제22호증의 1, 3, 4, 8, 9, 10, 13, 14, 15, 16, 17, 18, 갑 제24호증의 1, 2, 3, 7, 9, 10, 11, 13, 17, 27, 32, 36, 을 제5호증의 1, 2,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- 가.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는 2009. 4. 21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들과 사이에 원고 보유의 특허 권 등에 관한 기술을 사용하는 특허기술사용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  - 나.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제1조(계약의 목적)

갑(원고)은 갑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을(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 씨)에게 부여하는바, 본 계약의 목적은 위와 같은 갑, 을 그리고 병(피고 1) 간의 권리·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
# 제2조(사용 특허 기술 등)

① 갑은 을에게 아래 표의 특허(실용신안)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, 을의 요청 시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특허 (특허번호 1 생략)폐타이어, 폐우레탄 컬러고무칩을 이용한 투수성탄성포장재특허 (특허번호 2 생략)폐타이어, 폐우레탄 컬러고무칩을 이용한 투수성탄성포장재의 시공방법특허 (특허번호 7 생략)폐골재에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표면처리 코팅방법 및 그 제품특허 (특허번호 3 생략)투수성과 배수성을 갖는 아스팔트 포장재 제조방법 및 그 포장재특허 (특허번호 4 생략)놀이터용 탄성포장재특허 (특허번호 11 생략)탄성투수 콘크리트와 그 제조방법특허 (특허번호 5 생략)재활성석재 및 콘크리트 블록의 부순돌을 이용한 다층구조의 탄성포장재특허 (특허번호 6 생략)재활성석재 및 콘크리트 블록의 부순돌을 이용한 다층구조의 포장재 시공방법특허 (특허번호 8 생략)투수, 정화, 동상방지 기능을 갖는 탄성포장재(섬유합침 탄성포장재)특허 (실용신안번호 1 생략)폐고무칩을 이용한 2단복층구조의 스포츠시설용 탄성포장재특허 (실용신안번호 2 생략)폐타이어를 이용한 스포츠시설용 포장재특허 (특허번호 9 생략)숯을 이용한 탄성포장재특허 (특허번호 10 생략)칼라형 고무칩 제조방법
  - ② 갑은 을에게, 을의 요청 시, 갑이 출원한 특허기술, 개발하여 추가 출원할 특허기술, 등록될 특허기술도 사용·실 시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이 등록되는 즉시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준다.
  - ③ 을은 조달청(나라장터)에 등록되어 있는 시방서(규격서)를 사용한다.
  - ④ 을은 기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한다.

## 제3조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체결된 당일부터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한다(다만, 갑은 본 계약에 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.

# 제4조(실시지역 및 기술사용료)

- ③ 을은 갑에게, 특허기술사용료로서 을의 놀이터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(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,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)의 3%를, 그 외 부분 매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(갑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, 을에게 발생한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)의 5%를 지급한다.
- ④ 을은 갑에게 위 제3항의 특허기술사용료를 매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한다.

#### 제5조(을의 의무)

- ① 을은 매출계약의 체결 내역, 재무제표 등의 을의 매출에 관한 모든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매월 말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을 및 병은,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, 갑의 동의가 없는 한,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가. 위 제2조의 특허기술(실용신안 기술포함) 및 장래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주는 특허기술(실용신안 기술포함) 등과 같 거나 유사한 기술 범위에 속하는 특허, 실용신안 기술 등에 대한 출원 및 개발을 하는 행위 및 제3자를 이용한 위 각 행위와 동일한 행위들.
- 나. 위 제2조의 특허기술(실용신안 기술포함) 및 장래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주는 특허기술(실용신안 기술포함) 등과 같 거나 유사한 기술 범위에 속하는 특허, 실용신안 기술 등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(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등)를 설정 받는 행위.

다.

본 항 가. 나.의 기술들을 실시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(제3자를 통한 영업행위 포함).

⑤ 을 또는 병이, 갑의 동의 없이, 본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, 이는 갑의 기술을 습득 후 응용 개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바, 이러한 경우 을 및 병은 연대하여 갑에게 위 영업 관련 공사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권리, 의무의 양도금지)

을 및 병은, 갑의 서면 동의가 없이, 본건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
## 제8조(특약사항)

- ① 을 및 병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 당일 액면 이십억(2,000,000,000원)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공증을 하여 준다
- ② 갑은,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, 을 또는 병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을 폐업, 휴업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태하는 경우, 위 제1항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한다(위 20억 원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약벌조의 금원임).
- ③ 을 또는 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, 갑의 동의 없이 을을 폐업, 휴업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태하는 경우, 갑이 요구하는 즉시 병은 갑에게 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 33.5%를 양도한다.
- ④ 을의 임직원, 병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까지 갑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을 업으로 제3자(기업, 개인사업체 등 포함)의 임직원, 고문 등이 되는 등으로 그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.

## 제10조(기타)

- ⑦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, 갑, 을 그리고 병은 각자 상호에게 본 계약체결 당일까지 어떠한 손해배상 채권, 채무불이행 채권, 영업수수료 채권 등의 일체의 채권이 부존재하게 됨을 약정한다(본 계약 체결 당일까지의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임).
- 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출계약의 체결 내역, 재무제표 등 매출에 관한 정보를 매월 말일 원고에 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영업을 해태하였고,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트에코(이하 '아트에코'라 한다)를 설립한 후 아트에 코를 통하여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실안권 등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는바,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위반되므로, 원고에게,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아트이앤씨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 주식의 33.5%인 13,4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 단

- (1)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
- 살피건대,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출파악에 필요한 장부 등의 열람·등사를 요청하였으나, 피고 회사가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·등사만 허용하자,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3947호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, 이 법원은 2010. 1. 5. 공사계약서, 매출장부, 소득세·부가가치세납부내역서,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·등사를, 피고 회사가 납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통장의 내역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각 허용하면서, 거래원장, 감사보고서, 세무조정계산서, 특별손익장부, 현금출납장, 기타 회계장부에 대하여는 열람·등사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에 비추어 볼 때, 피고 회사가 일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매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- (2)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 위반 및 영업해태 여부
- 살피건대, 을 제4,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회사는 2009. 6. 4.부터 2009. 10. 19.까지 원고에게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 관한 특허기술사용료 합계 133,762,49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특허기술사용료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영업을 중단 또는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(3) 제3자를 통한 영업 여부
-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, 갑 제17,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아트에코가 피고 1의 형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소외 3에게 980,849,625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 갑 제7호증, 갑 제25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회사는 도장공사업, 기타 도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, 그 본점이 서울 송파구 (주소 1 생략 )△△△△△빌딩 401호이고, 피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,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40,000주 중 13,400주 (33.5%)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아트에코는 탄성포장재 우레탄칩 제조 및 도,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, 그 본점이 용인시 처인구 (주소 2 생략)□□빌딩 2층이고, 2010. 1. 8. 특허청에 '포졸란 및 숯을 이용한 투수성 복합포장재구조 및 그 시공방법'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여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, 대표 이사는 소외 4, 사내이사는 소외 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에 비추어 볼 때,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, 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, 갑 제28호증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허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트에코를 통하여 원고의 특허권 및 실용실안권 등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. 피고들의 주장
- (1) 이 사건 계약은, 기간이 특허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약 16년 이상의 장기이고, 원고만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,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위약벌은 피고들에게만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고, 피고 회사의 특 허출원에 대한 권리·영업수행의 자유·폐업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며, 3년의 과다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고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바,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.
- (2) 이 사건 계약은,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악의적 행태로 인하여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체결하였고,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며, 원고는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는바,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무효이다.
- (3)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특허권자의 지위에서 다수의 업체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허기 술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을 마련해 둔 것으로서, 그 계약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이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하 '약관규제법'이라 한다)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, 장기의 계약기간동안 원고에 대하여만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고, 피고들에게만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부과하며, 피고 회사는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원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,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, 피고들의 해지권 등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서, 약관규제법 제6, 8, 9, 11조에 의해 무효이고, 이러한 약관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.

- (4)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사용권한을 부여한 특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특허 (특허번호 1 생략), (특허번호 2 생략)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, 그 무렵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되었는바, 위특허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사유를 지닌 사정을 알았다면,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, 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2010. 8. 11.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.
  - (5) 원고는 위 특허들이 일본의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마치 진정한 특허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며, 채권가압류 및 악의적인 행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는바, 피고들은 기망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.
  - (6)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되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, 그러한 사정변경은 피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졌는바,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반한다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.

나. 판 단

- (1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
-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은 특허종료일까지 존속하는데, 그 특허종료일은 각 특허에 따라 2011. 10. 16.부터 2028. 10. 1.까지 사이이고,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하며,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피고들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을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 갑 제26호증,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. 2. 7. 원고와 사이에 원고 제품의 판매 및 영업권을 위임받아 판매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, 2008. 1. 9.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,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기술 등에 관한 사용권한과 향후 원고가 추가 출원·등록할 특허기술도 사용·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피고들이 기출원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하기로 약정한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 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이상 20년 가까이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, 당사자 간의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폐업, 휴업을 할 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하기로 하며,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규정한 것이 피고 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,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(2)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
- 살피건대, 갑 제19호증, 을 제13호증의 3,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 1의 위 2006. 2. 7.자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1,258,127,26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,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러한 사실과 을 제 13호증의 1, 2, 4, 5,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거나, 원고에게 피고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  - (3) 약관규제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
-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  - (4)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
- 살피건대, 을 제5호증의 1, 2, 을 제6호증의 1, 2,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특허심판원은 2010. 6. 23. 특허 (특 허번호 1 생략)에 대하여, 2010. 9. 30. 특허 (특허번호 2 생략)에 대하여 이를 각 무효로 심결하였고, 그 무렵 위 무효심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 앞서 든 증거 등과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8,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7의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이 사건 계약상 피고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6의 특허는 13건이나, 그 외에도 원고는 15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점, 피고회사의 요청시 원고는 위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,을 제17호증,을 제26호증의 1 내지 제27호증의 3의각 기재,이 법원의 조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.
  - (5)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  - (6)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
- 살피건대,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,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바, 위 2건의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# 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서창원(재판장) 박종환 신정민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